

선 람	기 관 의 장

**금정구 구보 호외 제 364-6 2021. 2. 9(화)**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고**

- 장전동 618-1번지 공동주택 해체공사-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공고 -----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1-155호)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416호)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417호)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418호)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419호)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0**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420호)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21**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421호)

<b>회람</b>								
-----------	--	--	--	--	--	--	--	--

금정구 공고 제2021 - 155호

- 장전동 618-1번지 공동주택 해체공사-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금정구 장전동 618-1번지 공동주택 해체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2.9.

### 금정구청장

○ 지정 결과 : (주)대농구조안전연구소

순위	업체명	평가점수		
		계	사업수행 능력	입찰가격
1	(주)대농구조안전연구소	83	33	50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 미 영**

2021년 2월 9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416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기, 문장 및 사물 등”을 “상징물”로 한다.

제2조 중 ““구 상징물(이하 “상징물”이라 한다)” 이란”를 ““상징물”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예방하는”을 “방문하는”으로 한다.

4. 구가: 별표 5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그 품위가”를 “상징물로서 품위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따른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바에 따라”를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한 상징물 관리 매뉴얼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브랜드 마케팅 사업

제6조제1항 중 “시행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상품 주문(제작)량 총금액의 1퍼센트로 하고,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면”을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승인 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구의 사정으로 상징물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징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효율적으로”를 “효과적으로”으로, “자문하는”을 “심의·의결하는”으로, “설치·운영”을 “설치하여 운영”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구 상징물인 문장이나 브랜드 슬로건 또는 캐릭터를”을 “구 상징물을”로, “취한다”를 “취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8조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구가(제3조제1항 관련)

# 금 정 찬 가

작사 : 이갑철

작곡 : 김종윤

Moderato



고 당 봉 금 빛 새 암 동 이 트 이 면  
 푸 른 솔 군 은 절 개 지 켜 온 성 터  
 사 대 문 옛 터 에 진 달 래 꾀 면



새 아 침 까 치 가 소 식 전 하 고  
 조 상 의 맥 박 을 이 어 온 고 장  
 다 정 한 이 웃 과 웃 음 꽃 꾀 네



응 비 의 나 래 꾀 면 환 한 햇 살 이  
 너 와 나 손 잡 고 발 맞 춰 나 가 면  
 훈 훈 한 인 정 담 고 하 나 가 되 면



우 리 의 가 슴 을 비 쉼 주 리 라 힘 차  
 우 리 의 이 땅 은 무 궁 하 리 라  
 우 리 의 앞 날 은 밝 아 오 리 라



게 나 가 자 앞 서 나 가 자 금 정 미



래 를 펼 쳐 가 는 우 리 의 금 정

<후렴>

구가(제3조제1항 관련)

# 내사랑 김정

작사 김영복  
작곡 설운도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in G major (one sharp) and 4/4 time. It consists of nine staves of music with corresponding lyrics and guitar chords. The chords are: D, A/C#, Bm7, A, G, D/F#, Em7, A, D, Bm, Em7, A, D, A, D, G, A, Bm, D, Em, A, D, Bm, Em, A, D, Bm, A, Bb, C, D.

금 정 산 힘 찬 기 상 아 름 솟 아 오 르 고  
 찬 란 한 문 화 위 에 새 시 대 가 꽃 피 고  
 오 른 대 푸 른 습 결 새 희 망 이 고 동 치 네  
 호 국 의 금 정 산 성 우 리 터 전 지 켜 왔 네  
 눈 부 신 태 양 처 럼 상 그 러 운 꿈 을 안 고 -  
 마 주 한 얼 굴 마 다 새 희 망 을 노 래 하 며 -  
 새 계 로 - 달 려 가 자 - 내 - 사 랑 금 정  
 미 래 를 - 얼 어 가 자 - 내 - 고향 금 정  
 열 정 을 편 처 라 - 짚 - 은 날 의 그 대 이 -  
 영 - 원 토 복 빛 나 리 라 - 우 - 리 의 금 정 DC  
 영 - 원 토 복 빛 나 리 라 - 우 - 리 의 금 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 미 영**

2021년 2월 9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417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93명”을 “81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집행기관의 정원: 802명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총계	818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14					
3급	1	1				
4급	5	3	1	1		
5급	45	21	2	4	2	16
6급 이하 계	763					
연구직 계	1					
연구사	1					
별정직 계	2					
6급상당 이하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 미 영**

2021년 2월 9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418호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3조”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고른 영양 있는 음식 및”을 “영양가 있는 음식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을 말한다.

제4조제1호 중 “차별받지”를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장애여부, 경제상황, 학력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를 “아동 최선의 이익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구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구성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시행하고 평가”를 “수립·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을 “추진실적을”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참여기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③ 아동이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업무 담당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기한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실태조사)”를 “(아동 실태조사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하고, 실태조사 분석결과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아동,”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로 한다.

제1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 연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1조의 제목 “(수당 등)”을 “(수당)”으로 한다.

제5장(제23조 및 제2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장 아동영향평가

제23조(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성별, 연령별, 사회적 환경 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아동영향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아동 관련 중장기 정책 또는 사업
2.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③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장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25조(설치)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기능)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권리와 관련된 사항

제27조(구성) ① ombudsman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ombudsman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해촉) 구청장은 ombudsman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ombudsman을 해촉하여야 한다.

1. ombudsman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ombudsman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ombudsman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ombudsman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ombudsman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ombudsman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

우

제29조(수당)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읍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 미 영**

2021년 2월 9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419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 미 영**

2021년 2월 9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420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 미 영**

2021년 2월 9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421호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구호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다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및 구호 활동, 화재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